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48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이재인[6548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31-08094호

시행일자 2023. 9. 25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검진 시 ‘내시경 세척·소독료’ 청구에 따른 방문확인 피해사례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공단 국가건강검진을 시행하거나,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 시 '내시경 세척·소독료' 이중 청구에 대한 방문확인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
3. '내시경 세척·소독료' 의 경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국가건강검진 관련 항목으로도 지급하고 있어 심평원 뿐만 아니라 건보공단에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되고 있습니다.

4.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시 이상소견이 나오는 경우 추가적인 검사나 처치를 한 후 급여 청구를 하면서 ‘내시경 세척·소독료’ 까지 급여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, 이때 공단 국가검진 내시경 검사에는 이미 '내시경 세척·소독료' 가 검진비용에 반영되어 지급되고 있으므로 심평원에 별도로 '내시경 세척·소독료' 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시 이중청구로 적용되어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5. 뿐만 아니라 본인 희망에 의한 건강검진에 따른 내시경 검사는 비급여 대상으로 '내시경 세척·소독료' 가 이미 환자부담 검진비용에 포함되어있으므로 별도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어 주의가 필요합니다.

6. 이렇게 발생한 부당청구금액 및 비율이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되면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대상이 될 수 있으며, 공단 건강검진의 업무정지 처분까지 가능한 사안으로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상기 사항을 회람하시어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 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